



의안번호	제 2021 - 7호
보 고 연 월 일	2021. 3. 29. (제10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1
II. 전문위원 개입, 위촉장 수여식 개최 .....	2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5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5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6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8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9
2.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10
V.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 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90
2. 관련 규정 .....	90
3. 공개 방법 .....	91
4. 추진 일정 .....	91

---

## VI. 2021 영문 양형기준 발간 경과 보고

1. 필요성 .....	92
2. 번역 및 감수 .....	92
3. 발간 및 배부 범위 .....	93
4. 추진 경과 .....	93

## VII.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 면담 .....	94
나. 접수 의견서 내용 .....	94
2. 오마이뉴스 공개질의서 제출	
가. 공개질의서 .....	95
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97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98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 .....	98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 .....	105
4.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106
나. 민원 우편 .....	110

□ [별지1, 2] ..... 수석전문위원, 신임 전문위원 각 프로필

---

---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39차	2021. 3. 15. 15:00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 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공청회 결과 검토

## II. 전문위원 개입, 위촉장 수여식 개최

### 1. 개요

- 2021. 2. 8.자로 손철우 수석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1. 2. 26.자로 최승원 전문위원, 2021. 3. 6.자로 김희연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석전문위원 지명 및 전문위원 위촉

####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2.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 5기, 6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7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 3. 위촉 내역

#### 가. 수석전문위원 지명

-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021. 2. 22.자)

#### 나. 신규 위촉

-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2021. 2. 22.자)

#### 다. 연임 위촉

-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021. 2. 27.자)
- 김희연 변호사(2021. 3. 7.자)

### 4.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21. 3. 29.(월) 15:00
- 장 소: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위촉장 수여: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이재신 전문위원

※ 수석 전문위원 및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2] 수석 전문위원, 신임 전문위원 각 프로필 참조



## 5. 전문위원 구성

[2021. 3. 29. 현재]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최승원 (수석전문위원)	제30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19.02.27.
	이재신	제32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1.02.22.
	백광균	제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03.02.
검찰	최성국	제30기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검사	20.09.14.
	유관모	제38기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20.02.17.
변호사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김희연	제41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3.07.
	이형일	제14회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20.03.23.
교수/ 전문가	강수진	제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한상규	제24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5.16.
	김혜경	해당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5.16.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8.20.
	박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과확산 팀장	19.09.09.

###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 공청회 개요

- 일시: 2021. 2. 5. 14:00~17:40
- 방식: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 진행 내용: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안 및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발표, 지정토론 및 방청객 질의·답변
- 참석자: 총 6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김우수(상임위원), 이주원 위원
  - 전문위원: 손철우, 최승원, 최성국, 백광균, 유관모, 김희연 위원
  - 자문위원: 고문현 위원
  - 일반시민, 기자, 변호사, 법원 관계자 등

####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김우수 상임위원
- 발표자: 손철우 수석전문위원
- 주거침입범죄 지정 토론자
  - 김종구(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최익구(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환경범죄 지정 토론자
  - 류필무(환경부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지정 토론자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공동범행을 가중인자로 하지 말고, 공동주거침입을 가중적 구성요건의 별도 소유형으로 두자는 의견(김종구 교수)
- 양형인자 중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예로 제시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에서 ‘실내 주거공간’을 ‘실내공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종구 교수)
- 양형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의 예로 제시된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서의 ‘범죄’를 성범죄와 기타 범죄로 구분하자는 의견(김종구 교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감경인자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김종구 교수)
- 주거신체수색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익구 변호사)
- 특별감경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예시규정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최익구 변호사)
-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의 예시규정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는 일반가중인자로 위상을 변경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익구 변호사)

#### 나.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화학물질 안전 법률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폐기물 범죄의 가중형량은 법정형까지 높이고 이득액은 특별양형인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환경오염 발생 정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설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대기·수질오염물질,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범행기간을 특별양형인자에 포함하여야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환경범죄에서는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정남순 변호사)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기타 행정명령 위반행위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정남순 변호사)

#### 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인 ‘동종 누범’이나 ‘내부고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근우 교수)
- 특별감경인자로 ‘사업주(법인) 등이 의지를 가지고 작업환경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반영하자는 의견(이근우 교수)
- 특별가중인자에서 의무위반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서 반복 발생의 판단 단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근우 교수)
- 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전형배 교수)
- 강화된 양형기준이 결국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되지 않을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염려가 된다는 의견(전형배 교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전형배 교수)

####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방청인 의견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야간에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사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야간에 침입한 것이 평온 침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

##### 나.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방청인 의견

- 환경범죄로 국제적 수준에 이르는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

##### 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민주노총 측 의견(방청인 의견으로 제출)

- 기업이 인력, 예산 및 작업 매뉴얼 위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는 가중요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경우에 말단관리자나 노동자에게는 감경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4개 의견 제시

##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2021. 1. 11.)에서 의결한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나. 조회 기간

- 2021. 1. 18. ~ 2021. 2. 18.

#### 다. 회신 기관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 32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3개 기관이 회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 45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43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라. 회신자료

- 별첨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 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총 3개 기관(단체) 회신

####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 양형기준안 주요내용

##### (가) 제정 이유

- 주거침입범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일이 많고, 주된 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임.
-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경합범으로 기수된 사건에 대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권고하는 실익이 있음.

##### (나) 주요 내용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된 범죄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
  - 형법 제321조(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식) 수색

○ 양형기준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 형법(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319	①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적 구성요건
	②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		
§320		특수 (제319조 각 죄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함	5년 이하의 징역	가중적 구성요건
§321		(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실)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	3년 이하의 징역	독립적 구성요건

- 특별법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② 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함 (공동주거침입)	4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 벌금
폭력행위 처벌법	§2③ 1호	이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닳, 형법 제319조의 조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누범주거침입)	7년 이하 징역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폭력행위 처벌법	§3④ 1호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형법 제320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누범특수주거침입)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2) 검토 의견

### (가) 형량범위 설정의 적정성 검토

- 현재 모든 양형기준은 기존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존의 양형관행을 토대로 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과거의 양형사례가 합리적 수준의 양형이었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과거의 양형실무를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의 양형관행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에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까지 기존 양형관행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단순한 경험적 분석에 근거하여 규범적 당위의 근거인 법정형을 범위를 이탈하는 것은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입법창출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함.
- 동 양형기준안은 일반적 기준으로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의 기본영역 설정에 있어서 주거침입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양형기준 설정시 과거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함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바, 주거신체수색에 대한 과거 선고형량이 다른 행위유형에 비하여 적은 관계로 기본영역 설정이 낮게 된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법정형을 볼 때 주거신체수색의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과 달리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그 불법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주거신체수색의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를 상

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동 양형기준은 누범 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가운데 누범특수주거침입의 기본영역을 10월-2년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누범특수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영역을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법정형의 존재가치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더욱이 누범특수주거침입의 경우에는 기존에 선고된 양형관행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양형관행의 반영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임. 마찬가지로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의 가중영역 역시 모두 법정형의 1/2에도 미치지 않는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바, 법정형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나) 양형인자 설정의 적정성 검토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함에 있다고 볼 때,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그 장소에 현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라고 해서 주거침입의 불법성을 감경하는 요소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의 발달로 드론 등을 이용하여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인식 및 현존 유무,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를 주거침입의 불법성을 감경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의 예로서 범죄목적은 단순히 비난할만한 동기로 포괄하기 보다는 그 자체를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누범 특수주거침입 등 유형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서 “주거 등 평온의 침해정도가 중한 경우”의 예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실시되어 있음.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라는 양형인자는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구성요건요소인 바, 이미 입법자가 법정형 산정에 있어서 반영했던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를 다시 가중적 양형인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평가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임.

- 동 양형기준안은 일반적 기준과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두고 있음.

### (3) 종합 의견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시 기본적으로는 법정형에 구현된 행위의 불법가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기존의 양형실무를 반영함에 있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양형사례가 극히 적고 그 형량 역시 매우 낮은 경우,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는 양형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나. 대한변호사협회

### (1) 제정이유

-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음.

### (2) 검토의견 : 일부수정 의견

#### (가) 결론의 요약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이하 ‘양형기준안’)은 비록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이지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명확한 단어나 표현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종과 형량의 기준 중 만취상태 관련 부분, 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부분,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정의 부분,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정의부분,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인 범행”에 대한 정의 부분, 일반가중인자인 “소극적 가담”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 부분은 수정의견입니다.

- 그 외 형량범위 설정 중에서 대유형 1의 소유형 3 주거·신체수색 중 신체수색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이며, 나머지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은, 법정형과 다년간 선고된 판결의 양형을 기초로 이루어졌기에 찬성의견입니다.

#### (나) 구체적 검토

##### ① 형종과 형량의 기준 중 만취상태 관련 부분 : 수정

- 양형기준안 3쪽에서는 음주나 약물로 만취상태가 되어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의 수 중 ②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범행 당시에 고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음주나 약물로 만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범죄 당시에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당연히 형사처벌의 전제가 됩니다.
- 따라서 ②의 경우에는 “음주나 약물을 할 당시에는”을 앞부분에 추가하거나, 고의란 행위당시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욕)이므로, 음주나 약물을 할 당시에는 주거침입행위를 하는 시기와 무관하므로, 고의라는 단어보다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고”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② 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 수정

- 양형기준안 2쪽부터 4쪽까지에서 대유형 1, 2 범죄를 대상으로, 특별가중인자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일반가중인자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에서 책임은 책임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본인 책임 없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오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이하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제한적 상태나마 있는 경우이므로, 없거나 모자라다는 의미를 지닌 결여<sup>1)</sup>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심신미약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일반인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 양형기준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는 특별양형인자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심신미약 상태는 일반양형인자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본인이 야기한/본인이 유발한) 심신미약”과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본인이 야기하지 않은/본인이 유발하지 않은) 심신미약”과 같이 수정하면, 일반인이 오해할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정의 부분 :

## 수정

- 양형기준안 2쪽과 4쪽에서는 대유형 1, 2 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양형기준안 9쪽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

---

1)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우'라면 형법 제319조가 아니라 제320조가 적용되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럼에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 정의에 따르면 대유형 2의 제1유형인 특수주거침입 등이 아니라, 대유형 1의 제1유형인 주거침입이나 제2유형인 퇴거불응의 경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유형 1의 제1유형 주거침입이나 제2유형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대유형 2의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가중요소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중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유형 2의 제2유형인 누범주거침입 등과 제3유형인 누범특수주거침입 등도, 누범 자체를 제외한 범행 자체는 주거침입, 퇴거불응과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구조가 동일하므로, 위의 논의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대유형 1의 제1유형 주거침입, 제2유형 퇴거불응, 대유형 2의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제3유형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의미가 없는 가중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은, 대유형 1의 제3유형 주거·신체 수색에만 해당한다는 의미라면, 양형기준안 10쪽의 마항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대유형 1의 제3유형에 한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명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비해 여러 명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한 경우라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양형기준안에서도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한 현장에 여러 명

이 있다면, ‘공동하여’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실제 여러 명이 공모를 하였으나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한 현장에는 1명만 있는 경우라면,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여러 명이 범행을 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대유형 1의 제3유형에 한함)”로 수정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 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를 양형기준안 10쪽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④ 특별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정의 부분 : 수정

- 양형기준안 3쪽, 4쪽에서는 대유형 1과 대유형 2를 불문하고 특별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안 9쪽에서 양형인자를 정의하면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에도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려고 하면,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sup>2)</sup>, 야간주거침입강도(특수강도)미수죄<sup>3)</sup>가 성립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침입한 후에 목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안에 따르더라도 경합범으로 처벌되므로,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반면 강간 등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 행위만으로 별도의 결합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데,<sup>4)</sup> 이 경우 단순 주거침입보다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부분을 보면,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바로 다음에 “성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4)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가중인자를 인정하여 양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바로 이어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형기준에서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를 별도로,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해당 “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 등으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작 기소되지도 않고 재판을 받지도 않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인정하여, (범죄유형을 불문하고) 양형에서 가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더구나 죄질이 안 좋은 경우(성범죄 목적, 스토킹, 보복, 원한, 증오감 등)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의 양형인자 정의 부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⑤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인 범행” 정의 부분 : 수정

- 양형기준안 3쪽에서는 음주나 약물로 만취상태가 되어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유형 1과 2 모두 일반가중인자로는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계획적인 범행, 3)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만 명시되어 있고, 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를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 10쪽 자. 계획적인 범행의 한 유형으로 ‘자의로 만취상



태에 빠진 경우(3쪽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① 유형)’와 같이 기재하여, 양형기준안 3쪽의 설명과 일관되게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⑥ 일반가중인자인 “소극적 가담”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 부분 : 수정

○ 양형기준안 9쪽 사항에서는 “소극적 가담”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양형기준안 3쪽과 같이 명시한다면, 국민 누구나 양형기준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 3쪽의 내용과 단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다.”에서 “소극적 가담으로 보지 않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양형기준안 10쪽 사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극적 가담 부분과 마찬가지로 단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다.”에서 “범행한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⑦ 신체수색 형량범위 설정 : 수정

○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10쪽에 따르면 ‘주거침입 > 퇴거불응 > 주거신체수색’ 순으로 형량분포가 되어 있어, 해당 순서대로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되, 소유형 3 주거신체수색은 법정형 중 징역형이 주거침입·퇴거불응과 동일하나 벌금형은 법정형에서 제외되어 있어 오히려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형 1 주거침입, 소유형 2 퇴거불응, 소유형 3 주거신체수색의 형량범위를, 기본영역을 ‘6월-1년’, ‘4월-10월’, ‘4월-1년’으로, 감경영역은 ‘-8월’, ‘-6월’, ‘-6월’, 가중영역은 ‘10월-2년’, ‘8월-1년6월’, ‘8월-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자는 주

거·신체수색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보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의 침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기에, 주거·신체수색 범죄는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과 같은 징역형(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면서 벌금형을 제외하였습니다.

- 특히 주거·신체수색 중에서도 신체수색의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기준안은 과거 선고된 판결의 형량 통계를 기초로 하였으나, 주거침입 395건, 퇴거불응 33건에 비해 주거·신체수색은 11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체수색은 단 1건에 불과하여(양형기준안 설명자료 9쪽), 1건의 판결에서 드러난 양형이 신체수색 범죄의 평균형량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주거·신체수색 중 신체수색은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⑧ 기타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 : 찬성

- 양형기준안의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은 법정형을 기초로,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제1심 단일범 또는 징역형 선고 총 529건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2020. 10. 23. 자 양형위원회 제105차 회의 주요내용(보고 안건) 중 전문위원 업무보고(의안번호 제2020-29호) 5쪽 참조], 대유형 1의 소유형 3 주거·신체수색 중 신체수색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 양형기준안에 찬성합니다.

#### 다.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

###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총 6개 기관(단체) 회신

#### 가. 각급 법원

- 범행 결과의 중대성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양형요소가 별개의 양형인자로 세분되어 특별가중인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유형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는 ①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가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②항과 ③항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를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와 별도의 양형인자로 구분하다 보니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으로서 실제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안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두 개 존재하여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권고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큰 경우'와 같이 양형인자표에 하나의 특별가중인자를 두고 그 정의 규정에 ②항과 ③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포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대유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나. 법무부

### (1) 양형기준(안) 주요내용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와 관련하여,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를 가중인자로 볼 필요는 있으나,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요소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균형에 맞음
  - \* 특별가중인자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범행 등

### (2) 검토의견

- 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기간은 죄질 및 그에 따른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 기존에 정립된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정도와 기간 자체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범행기간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한 경우>

- ①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② (채권추심법위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③ (증권·금융범죄 중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환경오염의 특성상 ‘중대한 환경오염’의 결과는 범행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양형기준(안)과 같이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만을 특별양형인자로 보는 경우,
  - 동일한 범죄행위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적발될 당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양형판단을 받게 되어 범죄가 적발된 시기에 따라 양형을 달리 취급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기간’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 환경범죄의 태양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을 필요

##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 양형기준안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가축분뇨법 등에 위반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종·형량의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정함

### (2) 검토 의견

- 환경범죄의 경우 신고 건수가 충분하지 않은 범죄가 상당수 존재하여 경험적 접근방식에 의한 형량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사례가 많은 폐기물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먼저 설정한 후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형량범위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형량범위를 결정한 점(설명자료 52면 이하 참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환경범죄의 양형기준 등 양형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차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함

① 환경범죄의 특성 고려 필요

-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미치는 만큼 위험성이 큰 반면, 침해의 원인이 복잡적이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장기간이거나 누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고, 기업 등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져 관련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그런 만큼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① 입증이 어렵지 않은 단순 환경침해 사건이었거나, ② 법인범죄 등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가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의한 침해였거나, ③ 국민적인 관심이 결집돼 수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서 유죄입증에 충분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한 일부 중대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수립 과정에서 단순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한 이외에 환경범죄(또는 환경범죄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 특히 ① 설명자료상 환경범죄와 형량범위 비교대상이 된 범죄는 환경범죄와 전혀 다른 성질의 범죄인 변호사법위반범죄, 증권·금융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등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고, ②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자료조차 없이 평균형량만으로 형량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범위 산출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③ 선고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도 각 선고에 영향을 미친 양형인자의 분포조차 도출하지 않아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이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도출하고자 법원이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간 환경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원에서 선

고한 형량을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음

- 환경범죄에 관한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선고사례를 바탕으로 그간 선고해온 형량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가 정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환경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양형기준안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② 법인범죄의 특성 고려 필요

- 환경범죄는 기업 또는 법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범죄를 법인 등이 범한 경우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는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법률에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는 양벌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법인의 특성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벌금형의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일 것인데, 양형위원회의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벌금형과 관련한 기준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아쉬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징역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벌규정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 역시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징역형 기준 설정 못지않게 벌금형 기준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가 정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환경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법원 차원에서 양벌규정 적용의 문제점을 천명하고 법정형과 관련한 입법적 대안까지 함

께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임

### (3) 종합 의견

-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양형 기준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환경범죄의 양형기준 등 양형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범죄의 특성 및 법인범죄의 특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국회가 정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환경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산정함으로써 환경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안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라. 대한변호사협회

### (1) 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위반죄, 건설폐기물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물환경보전법위반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가축분뇨법위반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음.

### (2) 검토의견 : 찬성·일부보완 의견

#### ① 결론의 요약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이하 ‘양형기준안’) 중 8쪽의 오타를 수정하고, 특별감경인자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부분과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 부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며,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만 기재할 것인지, 금지규정도 같이 기재할 것인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그 외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에는 찬성의견입니다.

#### ② 구체적 검토

- 양형기준안 8쪽의 오타 : 수정

- 양형기준안 8쪽에서는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7쪽

약어표에 따라 “건설폐기물법”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이하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48쪽에도 동일한 오타가 있습니다.

○ 감경인자 : 수정

- 특별감경인자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부분

- 양형기준안 9, 10, 12, 14, 16쪽에서는 대유형별로 모두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에서 책임은 책임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본인 책임 없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오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67쪽을 보면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제한적 상태나마 있는 경우이므로, 없거나 모자라다는 의미를 지닌 결여<sup>5)</sup>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심신미약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일반인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 양형기준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는 특별양형인자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심신미약 상태는 일반양형인자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본인이 야기한/본인이 유발한) 심신미약”과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본인이 야기하지 않은/본인이 유발하지 않은) 심신미약”과 같이 수정하면, 일반인이 오해할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 부분

- 양형기준안 26쪽 마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

5)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제외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같이 명시하여, 단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다.”에서 “범행한 경우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 : 검토 필요

- 양형기준안이 다루고 있는 모든 범죄는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금지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만 적용법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석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은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은 금지규정을 유형의 정의 중 구성요건란에 직접 명시하면서, 적용법조란에서는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안과 과실치사상·산업보건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보더라도, 전자는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후자는 적용법조란에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안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포함하여, 적용법조에 금지규정을 기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라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유형의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 : 찬성

- 양형위원회에서는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고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하수도법, ③ 대기환경보전법, ④ 소음·진동관리법, ⑤ 물환경보전법, ⑥ 해양환경관리법, ⑦ 폐기물관리법,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제1심 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죄, 징역형 선고인 양형조사대상 492건(사건 수는 피고인 수 기준)과 운영지원단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63건(양형자료조사 대상 아님) 등 합계 555건을 조사하여, 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양형기준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기타 환경관계법위반죄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나머지 법률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부 위반죄만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sup>6)</sup> 양형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유형의 분류(설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양형기준안은 일부 과실범(대유형 3. 물환경범죄 중 제4유형, 대유형 4. 해양환경 범죄 중 제2유형, 제3유형, 대유형 5. 가축분뇨 범죄 중 제3유형 등)도 포함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환경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수증할 수 있습니다.<sup>7)</sup>
- 또한 형량범위도 위와 같은 양형조사를 거치고, 유사한 법정형의 범죄에서 마련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sup>8)</sup>

## 마.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

6)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31쪽 이하, 2020. 10. 23. 자 양형위원회 제105차 회의 주요내용(보고 안건) 중 전문위원 업무보고(의안번호 제2020-29호) 22쪽 이하.

7) 20. 12. 7. 자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주요내용(보고, 의결 안건) 중 전문위원 업무보고(의안번호 제2020-31호) 62쪽.

8)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52쪽, 20. 12. 7. 자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주요내용(보고, 의결 안건) 중 전문위원 업무보고(의안번호 제2020-31호) 69쪽.

## 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 들어가며

- 2019년 6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강화되고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6개 법률에 대해 양형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환경범죄의 경우 환경문제의 특수성인 피해의 광범성, 피해원인의 불명확성, 이익과 피해의 일방성, 장기누적에 의한 피해 확대성, 정보의 편중성 등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보다 형사적 제재의 위하효과를 통한 사전예방적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경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업형 환경범죄의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은폐로 인해 그 적발이 쉽지 않고, 장기누적적인 유해물질의 노출이 있어야 외부에서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 (가) 대기환경보전법 범죄

##### ① 감경요소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과 수정의견

구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견	
특별양형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수정의견
	위양형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삭제 의견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인 위 자  / 기 타	행	청각 및 언어장애인	
	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수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의 경우를 제외
일 반 양 형 인 자  / 기 타	행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진지한 반성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 자  / 기 타	자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기		

○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의인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뿐 아니라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범죄의 공범 비율이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주범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벌성 차이가 크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자의 역할,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이 다양함에 따라 그 가벌성을 구분할 필요성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준안에서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삼았으나, 환경범죄의 경우 오염 피해의 공익적 위해성이

강하고 이후의 추가 피해는 막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미신고 배출장치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장을 인수하여 조업을 계속한 사례,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이 유실되면서 유해물질이 유출된 사례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를 예로 들며 행위불법이 가벼워 살인, 폭력 등과 같이 특별한 감경인자로 반영하고자 하나, 환경범죄의 경우 오염 피해의 공익적 위해성이 강하고 이후의 추가 피해는 막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예견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수의 특별양형인자로서 한계 설정 필요성
  - 일반양형인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없음과 관련해 양형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한 취지를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자수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함은 그 악용가능성으로 인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일반적 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양형위원회는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및 반영 여부는 충실한 양형 심리를 기초로 판단 가능하고 양형인자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의 내심을 감경요소로 삼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며, 환경범죄는 그 피해를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 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범죄의 결과를 회

복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기 어려워, 별도 감경사유로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없음

- 위 양형인자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없음’의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입건되거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② 가중요소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과 수정의견

구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견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대규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경우
		자연환경에 중대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행위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기타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위 양형인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환경범죄의 성격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포괄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라는 하나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기보다는, 양형인자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분리하여 가중해야 할 양형인자라 보아야 합니다.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의 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행수법 불량’이라는 일반적인 양형요소로만 포괄하게 될 경우,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할 양형요소임에도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거나 간과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세분화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대규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독립된 양형인자로 설정하여 감경-기본-가중 형량 구간의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위 양형인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침해의 법익이 달라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9호) 그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해성이 특히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나) 물환경보전법

①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li> </ul>



			에서 정한 환경보호 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 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 우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②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형위원회는 본 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0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 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i> <li>-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li> <li>-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li> <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

- 양형위원회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업형 환경범죄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범행 주도자

와 단순 행위자를 구별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이 중대한 경우에만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통한 위화효과를 고려할 때 그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양형위원회는 본 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0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li><li>-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li><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ul>
--

- 환경오염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오염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고, 석면으로 인한 악성종괴종 발병과 같이 오염물질에 노출된 후 실제 질병이 발현되기까지 잠복기가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부분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바와 같이 법상 요구되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단순히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전제를 한 것이기에 그러한 점에서는 양형인자로 고려함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그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법상 처리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로 처리한 경우까지 단순히 밀폐된 장소에서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음성적 처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

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는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양형위원회는 본 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위원회는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하였는바, 실제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집중호우 등 우기 시에 오염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에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경우나, 오염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에 별도 배출관을 연결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폐수무단방류의 경우에는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자칫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첨단시설이 아닌 단순 시설의 설치를 통한 무단방류와 기존 시설에서 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을 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양형위원회는 본 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경피해의 특수성상 중대한 환경오염의 발생여부가 범죄적발 시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오염물질의 장기간 배출로 인해 중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본 요인에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위원회는 본 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제외한다.

- 기업형 범죄의 특수성상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폐수무단방류 등이 처음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무단배출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형위원회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정도의 폐수의 대량 무단배출, 고농도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다) 기타범죄

- 폐기물, 해양환경, 가축분뇨 범죄 등에 대한 양형인자도 위에서 살펴본 대기환경범죄와 물환경범죄와 같이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폐기물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실제 선고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범죄발생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1, 2, 3, 4 유형 모두 양형기준에 따른 가중된 형은 법정형보다 형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폐기물 무단투기·매	4월 - 1	8월 - 2년	1년 6월 - 4	7년 이하

	립·소각	년	년	년	
2	무허가폐기물처리업	-10월	8월-1년 2 월	1년-2년 6 월	5년 이하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8월	6월-1년	10월-2년	3년 이하
4	처리기준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년 이하

○ 그러나 환경범죄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점, 단 일회  
의 환경범죄만으로도 그 피해가 엄청난 점, 환경범죄의 피해가 나타나  
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  
은 점 등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환경범죄의 형사적  
제재 강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라) 집행유예의 고려 인자 관련

○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 기준과 관련하여 긍정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그런데 기업형 환경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친 환경범죄  
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점, 환경범죄는 환경훼손의 사전예방적  
필요성에 기해 형벌의 위하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내부고발

등을 통한 환경범죄 적발이 매우 필요한 범죄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미필적 고의를 확대 인정할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현대의 과학수준으로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훼손의 정도나 피해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연히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를 집행유예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에 있어 형벌의 위하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기업형 환경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보다 초범인 경우도 많으나, 환경범죄가 처음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계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집행유예 요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④ 내부고발의 주요참작 사유

- 내부고발은 환경범죄를 대외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사개시 단서로서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일반참작사유가 아닌 주요 참작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  
**총 11개 기관(단체) 회신**

## 가. 각급 법원

- 대유형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양형기준은 상상적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안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가중되고, 양형기준 역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두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두게 되면, 결국 동일한 양형 요소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형을 두 번에 걸쳐 가중(권고 형량범위 결정 단계에서 가중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단계에서 다시 가중)하는 셈이 됩니다.

## 나. 고용노동부

- 양형기준 수정안의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와 관련하여,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는
  - 단지 위험한 장소임을 알고 출입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업과 무관한 장소에 출입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과실을 감경요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수정안>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

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는

- 피해자가 해당 위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에 따른 사고 발생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수정안>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 다. 법무부

### (1) 수정배경

- '20. 1. 16.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른 양형기준 설정 필요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2) 대상범죄 관련 부분

- (양형기준 설정 대상 세분화) 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포함, ②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 일부 포함, ③ 양벌규정 벌금형은 제외\*

\* 수정안은 “선고 형량이 선거권·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 외에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양형기준에서 제외

- (검토의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법인의 벌금 법정형을 상향한 점(1억 원 → 10억 원), 산재 예방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필요

### (3) 양형인자 관련 부분

○ (양형기준안의 구체적인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법정형 : 징역 7년 이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내 재범
기존	4월~10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10월~5년3월	10월~7년10월15일	-
↓						
수정	6월~1년 6월	1년~2년6월	2년~5년	2년~7년	2년~10년6월	3년~10년6월

-① (특별가중) ‘유사 사고 반복적 발생’, ‘다수 피해자 발생’ 추가

-② (특별감경) ‘피해자 과실’ 부분을 삭제하고 ‘사고발생 경위 참작 사유’로 단일화, ‘자수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 추가

-③ (일반감경) ‘상당금액 공탁’ 삭제, ‘위반사항 시정’ 추가

○ (검토의견) 특별가중 양형인자에 ‘유사사고 반복적 발생’, ‘다수 피해자 발생’이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유사사고’, ‘다수 피해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일반적으로 양형기준 효력발생일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

###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

##### (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 형종 및 형량 기준

- 과실치사상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8월	6월-1년	8월-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6월	4월-10월	8월-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8월	6월-1년6월	1년-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5년

(2) 검토 의견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 2021년 1월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임.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를 도입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법정형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는 7년 이하 1억원 이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및 주요업무위반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나) 양형기준 설정 범위

-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지나친 처벌위주의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장명령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양형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아울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다양한 행위태양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명확한 통계와 실증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 범죄 유형 분류

- 한편,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형법상 과실치사상 범죄는 실질적 연관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범죄군으로 구분할 실익은 높지 않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므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상당수 공유할 수 있음.

## (라) 형량범위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의무위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예가 없어 다른 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였으나, 비교 범죄군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다른 범죄군과 비교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취지에 맞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보다 기본형과 가중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최근의 동향과 입법적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의무위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예가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감안한다면 처벌의 강화가 아

닌 사업자에 대하여 수감명령제도를 장려하는 등 산업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한다면, 비교 범죄군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형법상 과실치사상 범죄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처벌 위주의 법안은 중소기업 등 산업 경영계를 위축시킬 수 있음. 또한 현행 사업주의 경우 수감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의견과 사항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의무위반치사죄를 규정하여 근로자 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종전 권고형량 범위에 상당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보다 더 엄격한 형량범위를 권고한 것은 바람직함.

#### (마) 양형인자의 설정

-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조치의무위반의 경우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포괄적이므로 면밀한 실증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이에 맞는 양형인자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의견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의 경우와 실질적 연관성이 높아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라는 동일군에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형량범위 검토와 관련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위반의 경우 실형 대신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위주로 처벌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형량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 이에 처벌 수위가 유사한 범죄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처벌기준을 제시한 점은 이해하나, 다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지만 본 법률안의 경우 전문가를 비롯하여 산업 경영계에서 상당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중대재해법이 처벌위주의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하고 지킬 수 있는 예방법 내지 근거법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이에 산업 및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기업도 함께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고려해야 함.

- 형량범위 설정에서의 규범적 조정 필요성, 양형인자 내용정의의 구체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증연구를 포함하여 실무연구와 전문가 자문 수렴 지속이 바람직할 것임.

## 마. 대한변호사협회

###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016. 3. 28. 의결하여 2016. 7. 1.부터 시행한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소유형 4로 포함시키고 있었음. 그런데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어, 도급인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되었고,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조문위치나 내용이 변경되었음.
- 이에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별도의 대유형 2로 분류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포함하고, 기존 양형기준에 포함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량범위를 상향하였음.
- 구체적으로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2) 검토의견 : 찬성·일부보완 의견

#### (가) 결론의 요약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 중 특별

감경인자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부분과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분,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 부분,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유형의 정의 중 구성요건 부분은 수정의견입니다. 그 외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은 찬성의견입니다.

## (나) 구체적 검토

### ① 감경인자 : 수정

#### ○ 특별감경인자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부분

- 수정안 2쪽과 3쪽에서 대유형별로 모두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에서 책임은 책임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본인 책임 없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오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이하 ‘수정안 설명자료’) 41쪽을 보면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제한적 상태나마 있는 경우이므로, 없거나 모자라다는 의미를 지닌 결여<sup>9)</sup>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심신미약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일반인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 양형기준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는 특별양형인자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심신미약 상태는 일반양형인자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본인이 야기한/본인이 유발한) 심신미약”과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본인이 야기하지 않은/본인이 유발하지 않은) 심신미약”과 같이 수정하면, 일반인이 오해할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분

9)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수정안 2쪽과 3쪽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감경인자로 명시하고 있고, 수정안 9쪽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제외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같이 명시하여, 단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다.”에서 “범행한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②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 부분  
: 수정**

○ 적용법조란 기재방식 통일의 필요성

- 수정안은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 외에 금지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석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은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면 현재 시행 중인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만 적용법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 나아가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은 금지규정을 유형의 정의 중 구성요건란에 직접 명시하면서, 적용법조란에서는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과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보더라도, 전자는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을 같이 명시하고, 후자는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만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안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양

형기준을 포함하여, 적용법조에 금지규정을 기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라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금지규정 일부만 기재하는 방식 수정의 필요성

- 더 나아가 수정안은 금지규정의 일부만 적용법조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중 첫 번째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적용법조란에 “제38조”를 기재하였으나, 처벌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성요건은 “제39조”가 아니라 “제39조 제1항”으로, 세 번째 구성요건은 “제38조, 제39조”가 아니라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으로 적용법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 또한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중 첫 번째 구성요건은 “제38조”를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두 번째 구성요건은 “제39조”를 “제39조 제1항”으로, 네 번째 구성요건은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를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으로 적용법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네 번째 구성요건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달리 도급인 부분도 같이 기재할 경우,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제63조”로 수정해야 합니다.

③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유형의 정의 중 구성요건 부분 :  
수정

○ 제2유형 사업주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 수정안 5쪽에서는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중 세 번째 구성요건으로 “사업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제166조의2<sup>10)</sup>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현



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일정한 조문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준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제166조의2 적용 대상이지, 현장실습생에 대해서 사업주가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sup>11)</sup>에 따라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6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항은,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합니다)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만 적용될 뿐 사업주이기만 하면, 제169조 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sup>12)</sup>
- 따라서 제2유형 중 3번째 구성요건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해야 합니다.

○ 제3유형 현장실습생

- 수정안 6쪽에서는 대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중 네 번째 구성요건으로 “사업주, 현장실습

10)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해당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의무위반을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구성요건이 적용될 뿐입니다.

산업체의 장 또는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의 내용을, 제166조의2에서 명시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또한 도급인과 관련하여 제166조의2가 제63조를 준용하면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을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166조의2가 준용하는 제63조는 ‘도급인은 수급인 현장실습생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현장실습생과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 따라서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이 결합하면,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관계수급인의 현장실습생 또는 자신의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이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도급인을 같은 구성요건으로 기재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관계수급인의 현장실습생과 자신의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그럴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도급인과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명시하는 도급인과 현장실습생의 경우 적용법조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 ④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 : 찬성

- 수정안은 과실치사상 범죄의 소유형 중 하나였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별도의 대유형 2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양형자료 조사를 하였고(수정안 설명자료 11쪽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설된 ① 도급인의 형사책임, ② 사망자가 근로자 아닌 현장실습생일 경우의 형사책임, ③ 5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 모두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수정안 설명자료 21쪽).
- 또한 양형조사 자료를 기초로, 동일한 법정형이 있는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형량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수정안 설명자료 26쪽 이하). 특히 현행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는 형량범위가 감경영역은 4월-10월, 기본영역은 6월-1년 6월, 가중영역은 10월-3년 6월인데, 수정안에 따라 감경영역은 6월-1년 6월, 기본영역은 1년-2년 6월, 가중영역은 2년-5년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 이는 2016. 7. 1.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나서도, 계속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속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 조정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이유 수정안의 유형 분류와 형량범위 설정에 타당성이 있어 찬성합니다.

## 바.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

## 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 ‘범죄군’에 관한 의견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라고 합니다) 23~24면에서는 기존의 과실치사상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과실치사상 범죄는 실질적 연관성이 높으므로 굳이 별도의 범죄군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동반하기에 종전 과실치사상 범죄와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고의범죄이자 기업범죄로서의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성격을 도외시하고 산업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사업주 측의 과실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산안법 위반범죄는 불가피한 산업사회의 부산물이 아니고, 현장의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감독기관인 정부가 최선을 다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기본범죄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행위는 엄연히 고의(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의무위반 그 자체만을 처벌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본질적으로 고의범에 해당하는 산안법 위반죄를 과실범죄와 함께 묶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나 분류의 문제를 넘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될 때 본 범죄에 대한 이해를 현저히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실제로 2006. 3. 24. 산안법 일부개정(법률 제7920호)을 통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으나(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이후에도 해당 조문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금형이 주를 이루고 징역형의 선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본 형벌을 적용하는데 있어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현재와 같은 이해가 타당한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자유형에 관한 의견

- 먼저, 사망결과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년 ~ 2년 6월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 이내이므로 ‘특별가중’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합니다.
- 그리고 수정안은 양형자료조사 결과 기존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의 상당수가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실증적인 근거로 삼기에 빈약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설명자료 26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판결들 대다수가 징역형이 많지도 않거니와, 선고형도 너무 가벼워서 그 자체로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재범률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심각하게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더라도 척박한 토양에서 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 판결을 토대로 양형기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비교대상으로 법정형의 상한선이 유사한 다른 법령의 양형기준을 제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자료 27, 30, 33면에서는 근로기준법,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사행성·게임물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죄, 과실치사상범죄, 교통범죄, 변호사법, 석유사업법 등을 ‘단지 법정형 상한선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 위반죄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과 달리, 비교대상 범죄군은 과실치사상범죄를 제외하고는 보호법익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정형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들과 동일선상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3) 벌금형에 관한 의견

- 양형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에서도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벌금형 양형 기준을 또 다시 추후 과제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20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유예하며 중장기적인 과제로만 미룬바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기소 단계에서부터 구약식 청구를 하는데다(2017년 기준 82.91% 구약식, 4.65% 구공판), 공판에서도 피고인 100명 중 3~4명 정도만 유기 자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에 비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자연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4.81%(302명)에서 2017년 75.94%(426명)으로 높아지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도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89.10%로 확인됩니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 결국 산업안전보건 범죄 중 대부분의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되었는데 이번에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실무에서 선고되는 양형의 수준이 법 제정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산안법 위반 사건에서 사실상 형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의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평균액은 자연인의 경우 약 421만원, 법인 피고인의 경우 약 448만원입니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 앞의 자료). 이는 사망결과를 야기한 경우의 법정형 상한선인 1억원(양벌규정의 경우 10억원)에 비하여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건이 구약식으로 기소되고, 구공판이 되는 소수의 사건마저도 벌금형이 낮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계속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재범율은 약 97%로 통상 형사범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일반 예방(위하력)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리고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형사정책적 실패는 반복될 것입니다.

- 정리하면,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종전보다 10배나 높아졌지만(제173조 제1호),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기존의 양형 사례를 참고하여 계속 소액의 벌금만 선고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기업범죄로서의 특성을 가지는데, 양형기준 설정에서 이러한 범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기업(법인)에 대한 양형은 개별 법관이 종전 판결 관행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신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양형위원회가 2020. 12. 7. 제106차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며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해당 연구는 이미 완료되어 산안법위반 범죄 등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안을 제안한바, 관련 논의가 지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0. 12.,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 (4)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죄에 관한 의견

-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양형기준에는 아예 없었던 항목이 다수 신설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양형위원회의 입장은, 산안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화된 법정형이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바 개선의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조문에서 빠진 주요한 범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대다수의 행위유형입니다. 즉 제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1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등, 제157조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서 정하는 범죄로, 제56조 제3항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제57조 제1항 재해발생사실 은폐와 교사 공모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의 요소 또는 가중처벌 요소로 포함 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개정안에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5) 개별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 (가) 대유형1. 과실치사상 범죄 부분에 관하여

-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삭제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보험가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존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의무가입’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별도로 사보험을 가입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지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체가 양형인자가 될 수 없고, 전단부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만 남겨둬야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나) 대유형2. 산업안전보건범죄 부분에 관하여

- ‘내부 고발’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의 내부고발도 특별감경인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자수’나,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인데, ‘내부 고발’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은 의문스럽고 오히려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해당 회사에서 피고인은 범행전모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내부고발이 있었던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



반한 경우”라고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에서 정하는 대다수의 조치의무는, 사소해보일지라도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무위반이 ‘중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위반의 정도가 중함’이 꼭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설명될 이유가 없습니다.

#### (다) 추가가 필요한 내용

- 우선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 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등 행위불법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맞게 양형기준의 수정도 필요합니다. 즉 수급인에게도 방지의무가 있지만 도급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도급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위험이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 회신 요지

-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고의범으로서 과실치사상죄와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입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물론 이에 대한 양형 기준까지 모두 지나치게 형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양형인자의 정의,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 II. 3.과 같습니다.
- 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 구체적 검토 의견

##### (가) 논의 범주에 대하여

- 우리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sup>13)</sup>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

13)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만이 과실범입니다.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범죄의 기본은 고의범이며, 과실을 처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형벌구성요건은 고의범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범죄 또한 그 본질은 고의범이며, 고의의 기본범죄를 전제로 노동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고의범인 산업안전보건범죄를 과실범인 과실치사상과 함께 다루는 것은 범주의 오류입니다. 이는 법률의 체계적 해석, 논리적 해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지불식간에 산업안전보건범죄를 과실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나) 여전히 낮은 양형 기준

- 양형에 있어 안일하고 적당한 처리는 금물입니다. 특히 산안법 위반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결과적으로 법률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를 통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 그런 의미에서 현행 산안법은 물론 귀 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또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하한은 3년보다 낮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거듭 범한 경우(누범)에도 하한 1월에 1.5배를 가중, 1월15일에 불과한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기준 수정안 또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sup>14)</sup>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그 형이 6월 - 1년6월에 불과합니다. 또한, 형벌을 가중하더라도 2년 - 5년이 권고형인바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의 상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4) 양형기준 수정안 제3면에서 3유형 범죄로 분류한 범죄입니다.

- 그러므로 현재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형 하한에 적어도 1.5를 승하여야 하며, 특히 사람이 사망한 3유형의 경우 형벌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형벌의 책임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될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형벌의 다른 결과적 가중범 처벌 기준에 비로소 부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다) 양형인자의 정의,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

- ① 양형기준 수정안 제3면 2.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에서 ‘보험가입’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노동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의 법률상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 이행을 산안법 위반 범죄의 감경요소로서 고려하는 경우, 사실상 모든 사업주의 범죄가 감경 처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② 양형기준 수정안 제7면 [양형인자의 정의]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 ‘상당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하회한다는 점에서만 분명할 뿐 도대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상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보상의 기준은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어야만 합니다.
- ③ 양형기준 수정안 제14면 II. 집행유예 기준 2.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에 ‘피해자(유족)의 엄벌요구가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긍정적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유족)의 엄벌요구가 있는 경우’는 부정적 요소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유족)의 엄벌요구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기존 판결례들에서도 부정적 양형요소로 매년 고려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양형기준 수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라) 기타의견

- 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니다.

- 앞선 논의 범주에 말했듯이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본질은 고의범이면서 동시에 법인 기업으로 보면 기업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위반행위는 기업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구하는 바를 해당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범죄로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고 동시에 산재예방의무의 제1주체인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선제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 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 의견서 취지

-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됨. 이 법은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의 범죄이고,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을 앞설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노동자, 산재사망·시민재해 피해가족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각층 투쟁을 통해 제정됨
-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멈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 하도록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체계는 물론 조직문화를 갖춰야 함.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 4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말단관리자, 노동자 중심 처벌로 기업과 경영 책임자가 져야하는 책임은 꼬리 찢르기하는 상황임. 안전보건체계 구축 투자보다 벌금이나 과태료로 내는 비용이 더 값싼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이 필수적임
-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과 자본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확대를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고 나섬.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 90%, 재범률 97%<sup>15)</sup>로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과잉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을 지속해서 반복하겠다는 주장으로 위험

- 약 30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해인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처리결과<sup>16)</sup>만 보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고작 8건(1.5%)으로 이중 징역 1년 미만 3건, 1년 이상은 5건에 불과함. 이런 현실에서 기업이 할 일은 과잉처벌이다,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변명 대신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0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일터의 죽음과 재해에 책임지는 자세임
-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이 되었던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확대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확대, 특히 말단 관리자,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양형기준은 기업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현장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의 양형기준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빠른 시일 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함 (면담 일정은 추후 공문으로 소통 예정)

## (2) 산업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 범죄군 분류 반대

- 양형기준 수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와 과실치사상 범죄는 실질적 연관성이 높으므로 굳이 별도의 범죄군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동반하기에 종전 과실치사상 범죄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은 엄연히 고의(미필적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 이는 법 위반 그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

15)이는 일반 형법 범죄 재범률 47%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경각심이 없음을 드러냄

16)2020년 1월~10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로도 명백히 드러남. 산재사망이 산업사회에서 사업주 측의 과실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라는 인식이 기간의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어 왔음. 본질적으로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과실치사상죄와 함께 묶는 것은 단순한 분류의 문제가 아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것임. 여전히 과실치사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인식은 또 다시 극단적으로 낮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집중되어, 판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 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그에 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범죄를 과실치사상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업 범죄로 분류 설정하여 고의범죄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함

### (3) 자유형의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

-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기본범죄의 징역 1년 ~ 2년 6월은 여전히 형량 모두가 집행유예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범죄) 가중·특별가중·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음.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중범죄에도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권고 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기존의 판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함.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7년 이하 범위이므로 과연 이를 특별가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로 제기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치사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임. 실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면 그만이고 제시된 수정안이 적용되지 않음. 과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는 점인데 이는 개선하기 어렵게 됨
- 현저하게 낮은 자유형의 양형기준은 기존의 판결 결과에 기초하여 설

정한 것으로, 제16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자유형 선고 자체가 217건에 불과하며, 그중 실형은 4건으로 1,8%에 불과함. 동일 기간 매년 2,400명씩 1만 2천여 명이 사망하는 현실에 비하면 기간의 재판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남. 또한, 매년 노동부 점검 대상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선고는 같은 기간동안 34건에 그치고 있음. 이 또한 최근 2년은 1년에 2건에 불과함

- 비교대상으로 법정형 상한선이 유사한 다른 법령의 양형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사행성 · 게임물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죄, 교통범죄, 변호사법, 석유사업법 등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 법정형 상한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 법률로 선정되고, 이를 근거로 낮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양형기준 수정안은 조사기간 5년 동안 약 1만 2천여 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나, 217건의 자유형 선고, 실형은 4건에 불과했던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이에 기존의 선고결과만을 기초로 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전면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 (4) 벌금형의 양형기준 도입 필요

- 산업안전보건범죄 대부분이 벌금형만 선고되고 있음에도, 벌금형 양형기준은 도입되지 않았음. 이는 산재사망 벌금형의 상한선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귀결되었던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임
- 외국의 경우 법인 벌금의 상한선이 없거나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턱없이 낮은 벌금으로 법원 판결에 불신이 높은 상황임. 특히,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기업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런 인식이 반영되어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인의 벌금을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음. 따라서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다면 법인 벌금의 상향 취지는 실현되기 어려움

- 양형위원회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인 벌금만 있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과 평균 벌금 400만원 내외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답변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연구가 끝나고 양형기준안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시급히 논의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5)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자 처벌로

- 말단 관리자, 노동자 처벌의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범죄 기소와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단관리자나 노동자가 처벌되고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아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이는 낮은 형량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 시행임. 또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입증과 실질 처벌로 현실화 되는 것은 수사, 기소, 판결의 상당한 실물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서 말단관리자나 노동자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자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의 필요성이 엄중하게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5월 1일 6명이 사망(전원 하청노동자)하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는 공기단축과 이중 크레인 사용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임. 그러나 실제 처벌은 크레인 기사 노동자들만 받았음. 또한,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라는 직위로 현장의 작업반장, 팀장 등을 지정하고 기업의 조직적 사고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범위반의 직접 당사자로 처벌해 왔음. 산업재해는 기업의 인력, 예산, 조직문화 등에 의한 것이 주요 원인임. 이에 말단관리자나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예방으로도 이어지지 않음. 이에 산업재해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감경요인, 가중요인을 전면 개선하여 말단관리자나 노동자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감경요인

-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형위원회 수정안은 감경요소 양형인자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 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시설의 위험성을 이미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시함
  -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 고리를 풀고 작업한 것이 자기안전의무 위반인지, 작업물량이나 처리속도 압박 탓에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사망한 노동자의 사정이나 주장이 조사되거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재해를 노동자 개인과실로 몰고 감. 2016년 구의역 김 군 참사에서도 당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수리 정비가 2인1조 작업임에도 피해자가 안전메뉴얼을 위반한 개인과실로 초기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후 ‘시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원·하청 구조 속에서 ‘2인1조’ 작업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음이 밝혀짐. 동일한 유형의 2013년 성수역 사고, 2014년 강남역 사고에서는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과실로 치부된 바 있음
  - 사망에 이른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도 스스로 자기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감경요인의 양형인자로 두는 것은 불합리함
- 상당금액 공탁
  - 2021년 1월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경인자에서 ‘상당금액 공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으나, 양형기준 수정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 감경요인의 양형인자로 명시되어 있음
  - 피해자·유족과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근거로 승방망이 처벌을 하던 기존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

로 감경하는 것은 산재사망을 금전보상으로 해결하면 되는 풍토를 용인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함

- 산재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감경요인의 양형인자인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산재보험은 당연의무가입이며,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별도의 법정 보험제도가 그 대상에 따라 별도로 있음
-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으로 의무화 되어있고,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5년 이내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산재보험제도가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제도변화가 반영되지 않음. 산재보험 등 의무화 되어 있는 보험 가입자체를 양형인자로 될 수 없음

- 내부 고발

- 내부고발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의 내부 고발도 특별감경요인으로 해석 되서는 안 됨. 피고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볼 수 있으나, 기업이나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은폐하려는데, 이와 별도로 내부 고발이 진행될 경우 까지 감경요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오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말단관리자 노동자에 대한 감경요인 추가

- 충북 화학사업장에서는 공장장이 설계변경을 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설계변경을 지시한 지시자가 아니라 방폭 관리를 담당하 하급 부서장이 처벌되었음.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장의 팀장, 반장을 서류상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작업을 같이 하는 노동자로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는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의 직접 수행담당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 특히, 인력을 적정하게 배정하지 않고 위험작업의 감독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기업이 인력과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실질적 권한도 없는 경우 말단관리자나 노동자가 사고 발생에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감경요인의 양형인자를 구체화

하여 명시해야 함

○ 가중요인

-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에 투입한 경우 추가 필요
- 2013년 대림 산단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이 분진 및 가스제거 작업이 불충분하여 위험성을 고지하였음에도 작업허가서가 발급되고 작업에 투입하였음. 대림은 작업허가서 발급사실을 은폐하였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발급사실이 드러남.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 역시 노동자들이 23건에 달하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나 무시되었고, 수년에 걸쳐 10여건의 사망사고가 반복되었음.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개선요구를 하지만 무시되고 작업이 강행되다가 사고가 발생함. 특히,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위험요인의 개선요구를 안전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수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발함. 이에 사업장의 해당사고 및 전반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노동자 및 하청 사업주의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시킨 경우 기업의 책임자 처벌의 가중요인이 되어야 함
- 공기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금지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반영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 원하청 합동점검 등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중요인으로 명시
-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의 기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하도급 계약이 횡행하고 있음
- 2013년 당진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질식사고 등 2년간 약 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중 70%가 하청 노동자였음. 당진 현대제철은 원청과 하청이 KOSHA-18000 같은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이는 형식적인 서류인증에 불과함. 노동부 감독결과 1,000여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당진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에게 안전 관리비를 전혀 책정하

지 않음. 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보호구 품질, 지급 수량 등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 보호구 지급은 가장 최후의 노동자 보호대책이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되지 않는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하청 합동점검 등을 통한 하청 노동자의 위험요인 예방점검, 사업주간 협의체를 통하여 선후공정의 위험요인 조정, 혼재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도급인의 책임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 사고다발의 원인인 공기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금지, 원청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원·하청 합동점검 및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등이 명시되어야 함.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반영한 비용 산정 여부가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사고발생 시 원청의 사고 관련 조치도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2015년 삼성 불산 누출사고 당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을 원청에 보고했으나 비닐봉지로 조치하게 하고, 주말이라고 방치함. 결국 홀로 불산 누출 조치를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에 이름. 이에 사고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원청의 사고에 대한 조치 미비가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 사고은폐, 사고조사 방해 등을 가중요인으로 명시

- 2015년 삼성 불산 누출사고,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사고 등 다수 사고에서 기업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출입을 막고, 사고 보고를 지연하고, 동료의 진술 및 언론 인터뷰를 막는 등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

- 현행의 가중요인으로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증거은폐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사고은폐 및 사고조사 방해’ 등을 별도의 처벌조항을 제정하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 이에 현행의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를 ‘사고은폐와 사고조사 방해’로 폭을 넓히고, 일반 양형인자에서 특별 양형인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은폐와 사고조사 방해를 위해 노동청 공무원에 향응, 유착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기업 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요인의 양형인자로 명시되어야 함.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4명의 사망사고에서 담당 감독관이 피해자 대응, 사고대응 요령을 기업에 알려주고 법률대응 자문도 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음. 그러나 해당 기업은 사망사고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음. 2018년 부산 포스코 건설 LCT 사망사고, 최근의 포스코 제철소 중대재해 발생을 전후로 한 노동부에 대한 향응 제공 등 기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수사, 감독, 작업중지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처벌의 양형기준에서 특별 양형인자로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 노동부, 지자체등 정부 및 행정기관의 감독결과 및 시정조치 등 이행을 가중요인으로 명시
  - 2015년 메탄올 중독사고로 7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하는 참사가 발생함. 당시 초기에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견되고 노동부가 메탄올 사용금지를 점검감독 하였음. 그러나 사업장에서 노동부 점검 시에는 허위로 보고하고, 노동부 현장 점검이후 작업에서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노동자 실명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해당 사업주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음
  - 노동부, 지자체 등의 점검, 조사, 감독 등에 대해 허위로 제출하거나, 시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 처벌의 가중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함.

## (6) 양형기준 설정의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형사 처벌이 명시된 다수의 조항이 있으나, 양형기준 수정안은 사망에 대한 처벌 외에 일부조항만 확대하고 있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항과 현장 실습생 특례가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법 위반 조항이 너무 많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

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형사 처벌 등 처벌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임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 기존의 처벌 판례에 근거해서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의 산업재해와 법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 현재의 양형기준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기존의 다른 양형기준에서도 처벌 판결이 없어도 설정한 다수의 사례가 있기 때문임
- 이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입각하여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법 조항에는 양형기준을 적극 제시하여야 함.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법 51조, 54조),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훼손 (법 56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법 117조), 법 위반 신고에 대한 노동자 불이익 처우 금지 (법 157조), 고의적인 산업재해 은폐(법 170조)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차. 한국경영자총협회

- 지난 1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의 무조치 의무위반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하고, 산안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확대, 양형인자의 축소 및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 번 수정안 마련의 배경이 된 산재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요구가 지난 1.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반영된 상황에서 산안법 위반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이 우려됩니다. 또한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현행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작업환경개선 등 산재예방을 위해 평소 노력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시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양형인자(특별감경인자)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경총·중기중앙회는 동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 형량범위 상향

(가) 수정안 주요 내용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양형기준 신설(1,2 유형)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3유형)

<참고> 현행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u>산업안전보건법위반</u>	<u>4월 ~ 10월</u>	<u>6월 ~ 1년 6월</u>	<u>10월 ~ 3년 6월</u>

<참고>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u>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u>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2	<u>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u>	4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3	<u>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u>	<u>6월 ~ 1년 6월</u>	<u>1년 ~ 2년 6월</u>	<u>2년 ~ 5년</u>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영계 검토의견 : 수정안 반대

-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임
- '21.1.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상자 및 질병자 발생 시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시까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채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 처벌임
  - 양형기준 상향 추진 배경인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상당부분 실현되었음
- ②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현행 양형기준에서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을 과실치사상범죄에 포함시킨 것도 산재사고가 기본적으로 과실로 발생하고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임
- 한편 단순히 산안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임
  -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산안법 위반이 사상자를 발생시킨 업무상과실보다 불법의 정도나, 죄질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음

<참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형량범위 비교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 즉,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산안법 위반 및 치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엄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③ 양형위원회가 산안법 위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하는데 참고한 선고사례



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

- 양형위원회가 참고한 산안법 위반(치사) 선고사례는 217건('15~'19년)에 불과하고,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의 사례는 검토하지 않아 수정안을 마련하기에 표본 수가 불충분함
    - '15~'19년간 발생한 사고성 산재사망자는 4,714명이며, 양형위원회가 검토한 217건은 전체의 4.6%로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음
    -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도급인 처벌, 5년 내 재범 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선고사례가 없음
  -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양형위원회는 사행성·게임물범죄, 변호사법위반범죄 등과 같은 고의범에 적용하는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안법 위반(치사)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범죄유형별로 양형에 고려되는 감정·가중인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획일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④ 따라서, 산안법 위반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정 산안법 내용만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가중 규정만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필요

## (2) 양형인자 수정

### (가) 수정안 주요 내용

- (감경인자 축소) '상당금액 공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감경인자에서 삭제
- (가중인자 확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

<참고> 양형인자 수정사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del>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삭제)</de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u>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추가)</u> · <u>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추가)</u>
	행위자/ 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u>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추가)</u>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
	행위자/ 기타	· <u>상당 금액 공탁(삭제)</u>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 (나) 경영계 검토의견 : 수정안 반대

- ① ‘상당금액 공탁’을 산업안전보건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수정이유에서 밝힌 산재예방의 실효성과도 무관함
- ‘상당금액 공탁’ 요건을 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사고가 발생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가장 신속한 구제방법이므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상당금액 공탁’ 요건 삭제는 타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한 이유로 합의에 불응할 경우 ‘상당금액 공탁’ 사실이 법 위반 행위자의 합리적 양형에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행위자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공탁금액이 손해배상금액에 육박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합의사실에 준하는 감경인자로 고려될 여지가 있음

- 또한 ‘상당금액 공탁’ 요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감경인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고의범 성격의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등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과실범 성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도 ‘상당금액 공탁’ 요건이 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범죄만 ‘상당금액 공탁’ 요건을 감경인자에서 삭제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상당금액 공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양형위원회는 ‘상당금액 공탁’ 요건의 삭제 이유로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 ‘상당금액 공탁’이라는 감경인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상당금액 공탁’ 요건은 범죄 성립 후 이루어지는 ‘사후양형인자’이지, 범죄 성립을 예방하는 ‘사전양형인자’는 아님
- ② 현행 산업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를 통한 가벌성 강화는 적절치 않음
  - 양형위원회는 ‘특별가중인자 확대’\* 사유로 “동종누범, 이종누범 외에도 범죄 전력의 질적인 면을 양형요소로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 ①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그러나 ①의 경우에 대한 가벌성 확대는 이미 산업법상 가중처벌규정 및 수정안의 양형기준 강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만큼, 특별가중인자 도입은 불필요함
    - 산업법은 행위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됨

(산안법 제167조제2항)

- 이에 수정안은 산안법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에 반영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범죄는 이미 상당히 무겁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특별가중인자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함
- 또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에 피해자의 숫자는 그 행위자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우연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②의 경우를 가중인자에 반영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임
- 고의범에 의한 다수인명피해 결과는 행위자의 범행 계획이 실현된 것이므로 형량 가중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결과 발생이 우연에 좌우되는 과실범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형벌임
  - 단순 과실범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특별가중인자를 확대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법 이론에 맞지 않음
  - 한편,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충분히 강화되었음
- ③ 감경인자에서 ‘피해자 과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임
- 산업안전보건범죄는 대부분 행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감경인자에서 ‘피해자 과실요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함
- 피해자 과실의 경중을 살펴 행위자의 양형에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합당함
- 또한 감경인자 삭제로 인해 양형인자가 가중요건에만 치우치게 되어, 형벌 양정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④ 한편, 현행 양형인자 기준은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

할 수 있는 감경인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를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양형기준의 감경인자에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여부가 반영될 경우,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이끌어내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사업주가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립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산재예방 노력을 다한 경우, 이를 감안한 감경인자 마련 필요
- ⑤ 따라서, 양형인자 수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에 대한 감경인자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

### 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1) 단계별 권고 형량범위 대폭 강화

##### ① 수정안 주요내용

##### <현 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8월	6월~1년	8월~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6월	4월~10월	8월~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월~10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8월	6월~1년6월	1년~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5년

##### ② 연합회 의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와 동일 수준으로 완화 요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비교시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에 대한 형량범위 수정안은 과도함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 구성요건의 법적 성질은 과실범임
  - 수정안 설명자료에서도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리하지 않고, 과실치사상범죄군에 둔 이유를 산업안전보건범죄와 과실치사상 범죄는 실질적 연관성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
  - 그러나 수정안에서 제시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에 대한 영역별 형량 범위는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 및 고의범인 폭행에 따른 사망 발생 등에 대한 형량범위와 유사한 수준

반인륜적 범죄 및 고의범에 대한 형량범위와 비교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폭행범죄로 인한 사망 결과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8월 ~ 2월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1년 ~ 5년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다른 과실치사상죄와 비교할 때, 영역별 형량 범위가 과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형량 범위는 현행 과실치사상죄 양형기준과 유사

다른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영역별 형량 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1년	8월~2년
교통사고 치사	4월~1년	8월~2년	1년~3년
과실치사	~8월	6월~1년	8월~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6월	4월~10월	8월~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2) 감경요소 축소 및 가중요소 확대

① 수정안 주요내용

㉠ 감경요소

구분	현행	수정안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li> <li>○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li>○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부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보험 가입</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li> <li>○ 보험 가입</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 가중요소

구분		현행	수정안
특별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② 연합회 의견

행위-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축소 및 가중요소 강화로 편중된 감경·가중요소 구성 반대 → “현행 유지”

- 행위인자-특별양형인자에 대한 감경요소 대비 가중요소 강화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의 권고영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 초래
  - ‘감경·기본·가중’의 권고 영역의 결정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를 비교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고, 양형의 대원칙인 ‘행위 책임의 원칙’ 실현을 위해 원칙적으로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취급하고 있음
  - ※ 동수의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가 있을 시 감경영역이, 동수의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인 특별감경인자가 있을 시 가중영역이 권고
  - 그런데 수정안은 행위인자-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2개를 1개로 통합\*하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여 행위인자-특별양형



인자의 감경요소의 개수를 1개로 대폭 감소한 반면,

※ 수정안은 현행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통합

- 행위인자-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는 2개에서 3개로 확대토록 하여 총 3개가 되도록 수정하여 가중요소 3개, 감경요소 1개로 재판시 가중영역 선택 우려가 높아짐
- 행위인자-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대비 가중요소 강화시 가중영역 상한의 1/2 가중처벌 받을 우려가 현저히 높아짐
  - 행위인자-특별가중인자가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많을 시 권고영역 상한의 1/2을 높여 형량범위를 정하는 반면,
  -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감경인자가 행위인자-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많더라도 감경영역 하한의 1/2을 낮추어 형량범위를 정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감경·기본·가중영역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권고 영역이 됨
  - 이에 수정안에서 비록 행위자/기타-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가 1개 증가했지만, 행위-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가 감경요소 대비 2개 더 많도록 수정하여 가중영역이 선택될 뿐만 아니라 1/2가중 처벌까지 받을 우려가 현저히 높아짐

수정안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및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경우’를 통합하여 현행과 같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으로 유지 요망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유사한 사고’는 포괄적이어서 대부분 건설사고는 유사 사고로 해석될 우려
  - 건축현장의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인 추락사고의 경우, 추락사고 발생장소도 다양(가설구조물, 지붕, 개구부, 기타구조물 등)할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도 다

양(중앙난간대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설치 미비, 안전대 및 안전모 미착용, 추락방망 미설치 등)함에도

- ※ [안전보건공단 공동기획] 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e대한경제, '20.4.23)
- ※ '17~'20.9.18, 추락사고는 전체사고의 59.9% 차지(소병훈 의원실 보도자료)

‘유사한 사고’를 사고원인이 아닌 사고유형별로 포괄적인 판단시 대부분의 건설사는 유사한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가중요소가 추가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행위-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서 제외 필요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 필요
  - 행위-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하였으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 즉,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이 되는 필수적 안전의무 위반이 이미 가중요소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요소로 규정할 경우, 중복적인 요소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해당 가중요소 삭제 필요

수정안의 행위-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를 현행과 같이 포함 요망

- 타 형종의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 현행 41개 양형기준 중 살인·강도·폭력·방화·성매매 등 흉악범죄를 포함한 27개의 양형기준에서 ‘경미한 경우’를 행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로 포함하고 있으며,

-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와 유사한 교통범죄 및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경미한 상해’ 등을 행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포함

※ 타 형종의 경미한 피해 등을 행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함 사례는 별첨 참조

- 또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유사한 사고의 반복 발생’과 ‘다수 피해자 발생’으로 나누어 가중요소 개수는 확대하는 반면, ‘경미한 상해 발생’를 삭제하여 감경요소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함

### (3) 기타 의견

행위자/기타-일반양형인자의 감경 요소인 ‘보험가입’의 정의 규정 수정 반대

- ‘보험가입’의 정의를 수정안과 같이 변경시 건설사는 근로자의 손해를 대부분 보상하는 수준의 근재보험을 가입해야 함에 따라 건설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 수정안은 ‘보험가입’의 정의 규정을 당초 ‘자동차종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서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변경했으나
- 건설공사 발주자는 근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않아 근재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건설사는 거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수준의 근재보험 가입을 위해 안전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근재보험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현장 안전확보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우려됨

별첨

타 형종에서 경미한 피해를 행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포함하는 사례

연번	구분	형종	행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1	살인범죄 양형기준		미수의 경우,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2	뇌물범죄 양형기준	1.뇌물수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강도범죄 양형기준	2.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4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5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2.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경미한 상해
6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2.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7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2.허위진단서 등 작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8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9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2.금융범죄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10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1.등록권리침해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저작권침해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영업비밀침해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4.부정경쟁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11	폭력범죄 양형기준	1.일반적인 상해	경미한 상해(1, 4유형)
		2.특수상해·누범상해	경미한 상해
		3.폭행범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6,7유형) 경미한 상해(2,4유형)
		4.협박범죄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경미한 상해(2유형)
12	교통범죄 양형기준	1.일반 교통사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위험운전 교통사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교통사고 후 도주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13	선거범죄 양형기준	1.매수 및 이해유도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14	조세범죄 양형기준	1.일반 조세포탈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15	방화범죄 양형기준	1.일반적 기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경미한 상해(1유형)
16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1.배임수재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17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1.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2.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18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9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1.체포·감금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유기·학대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0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1.강요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권리행사방해 등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1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1.업무방해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경매·입찰방해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2	손괴범죄 양형기준	2.누범·특수손괴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상해(1,3유형)
2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1.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24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5	통화·유가증권·부정 수표단속범위반범 죄 양형기준	3.부정수표 발행 등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26	대부업법·채권추심 범위반범죄 양형기준	2.채권추심범위반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27	명혜훼손범죄 양형기준	1.허위사실 적시 명 혜훼손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모욕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V.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 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1. 3. 29.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1. 4. 초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1. 4. 하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VI. 2021 영문 양형기준 발간 경과 보고

### 1. 필요성

-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 필요  
⇒ 외국 양형위원회 관계자나 학술 연구 단체·개인에게 영문 양형기준 책자 제공 필요가 있음
- 2014. 2. ‘2014 영문 양형기준’ 발간 이후 책자 재고 소진

### 2. 번역 및 감수

#### 가. 번역자 및 번역 소요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자연, 이자영 조사위원
  - ‘2014 영문판 양형기준’ 발간 이후 배임수증재범죄 등 총 1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고, 12개 범죄군이 수정됨 ⇒ 신설·수정된 양형기준에 대한 영문번역 필요
  - 7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된 양형기준 해설 번역 필요

#### 나. 감수자 및 감수 소요

- 사법연수원 영미법 담당 김은실 초빙교수
  - ‘2014 영문판 양형기준’ 발간 이후 배임수증재범죄 등 총 1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고, 12개 범죄군이 수정됨 ⇒ 신설·수정된 양형기준의 영문번역에 대한 감수 필요
  - ‘2014 영문판 양형기준’ 발간 당시 번역된 23개 범죄군 양형기준과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하여, 23개 범죄군 양형기준도 재검토할 필요 있음
  - 7기 양형위원회에서 수정된 양형기준 해설의 영문번역에 대한 감수 필요

### 3. 발간 및 배부 범위 : 총 600부

- 법원, 행정부, 검찰청, 국회 등 기관 배부 및 국내외 귀빈 방문 시 증정용

### 4. 추진 경과

- 2020. 3. 23. 2021 영문 양형기준 번역 및 발간 계획 결재
- 2020. 4. 3. 사법지원실 영문번역 협조요청 공문 시행  
(사법정책심의담당실 조사위원 2명이 번역)
- 2020. 4.~10. 번역 작업
- 2020. 10. 19. 사법연수원(김은실 교수)에 감수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020. 10.~2021. 3. 감수 작업
- 2021. 4.초 발간 예정

## Ⅶ.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 1.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가. 면담

- 일 시: 2021. 1. 21. (목) 14:00 ~ 14:30
- 장 소: 양형위원회 위원장실(대법원 1501호)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대응과장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면담 내용
  - 보건복지부 측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
  - 현행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와 수정 요청

#### 나. 접수 의견서 내용

-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
  -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
  - \*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
-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
  -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 받을 가능성 존재

-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

## 2. 오마이뉴스

### 가. 공개질의서

#### (1) 개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립편집부입니다.

저희는 2020년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교제살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제상대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는 여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한 108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으며,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양형 편차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과 함께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의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제살인 판결문 총 1,362페이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가해 동기, 범행 유형 등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양형 편차가 큰 경우를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그 예로 아래와 같이 판결문 2부를 첨부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합24 판결문(징역 7년)

▲수원지법 2018고합203(징역 20년)

그리고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고합108 판결문 1부도 함께 첨부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저희는 이러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개정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에 대하여.

현행 양형 기준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제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 역시 위 정의에 부합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108개의 사건 중 76건(70.4%)이 피해자 거주지나 그 근처 또는 차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② 양형 기준의 가중 영역과 관련하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앞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폭행, 감금, 살인 미수 등으로 가해자가 전과가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상습적 폭행 사실이 적시된 경우 또한 108건 중 22건(20.4%)나 되었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의 관계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제상대에 대한 과거 범행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가중 요소로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 108명 중 앞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동일 가해자에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 만큼, 과거 동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던 경우 또한 가중 요소로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양형 기준의 감경 영역과 관련하여.

앞서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낮춘 바 있습니다. 범행에 극도

로 취약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공유 관계로 인해 할 수 없이 처벌불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일반 감경 인자로 낮춰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살인죄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의 여성이 교제 상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앞서 2.1항, 2.2항, 2.3항을 부분적으로라도 조속히 살인 사건 양형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질의**

- ① 위 4개 의견에 대해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② 위 의견을 검토하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부분적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가 가능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시오.
- ④ 위 제안과 별도로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나 계획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주시시오.

**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1)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양형위원회는 13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양형기준의 설정·수정은 양형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귀 기관이 주신 의견은 양형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나, 주신 의견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수정할지 여부는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3)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1. 01. 30.까지 총 314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12.15.(1)	○ 개별사건 법률상담 요청
2	2021.01.07.~01.30. (245)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2021.01.14.~01.30. (6)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강력한 처벌 요청
4	2021.01.15.~01.30. (48)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5	2021.01.08.(1)	○ 성범죄,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1.01.09.(1)	○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7	2021.01.09.~01.19. (5)	○ 형사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8	2021.01.14.(1)	○ 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9	2021.01.23.(1)	○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민원
10	2021.01.24.(2)	○ 취지불명
11	2021.01.27.(1)	○ 장관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한 건의
12	2021.01.28.(1)	○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 요청
13	2021.01.28.(1)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

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글만으로는 민원취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1. 1. 31.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287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1.31.(287)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및 강력한 처벌 요청

####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1. 02. 20.까지 총 8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11.10.(1)	○ 대법원 판결 시 1,2심의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2	2021.01.04.(1)	○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한다는 내용
3	2021.01.05.(1)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4	2021.01.18.(1)	○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5	2021.01.25.(1)	○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남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6	2021.02.08.(1)	○ 형사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7	2021.02.15.(1)	○ 아동관련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8	2021.02.16.(1)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11. 10. 접수번호:2AA-2011-030738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1. 4. 접수번호:2AA-2101-035480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1. 5. 접수번호:2AA-2101-011211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대통령비서실에 접수(신청번호:1AA-2101-0455742)된 민원 중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이첩(2020. 1. 18. 접수번호:2AA-2101-0512318)된 부분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1. 25. 접수번호:2AA-2102-0671565)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2. 8. 접수번호:2AA-2102-028111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2. 15. 접수번호:2AA-2102-054387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2. 16. 접수번호:2AA-2102-058263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1. 02. 20.까지 총 3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12.16. ~2021.02.15.(2)	○ 「2020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결정 부분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2	2021.02.01(1)	○ 확정사건의 피해자로서 해당사건 판결이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 해당사건을 검증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12. 16.자, 21. 02. 15.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결정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사건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 안내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처리

[별지1]

■ 신임 수석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최 승 원(崔 乘 元)
	생년월일	1974. 4. 4.
	출 생 지	강원 강릉
	소 속	부산고등법원
	출신학교	강릉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b>주 요 경 력</b>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 2001.	해군법무관	
○ 2004.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8.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 2012.	인천지방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 2013.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6.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 2021.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별지2]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이 재 신(李 再 新)
	생년월일	1976. 8. 13.
	출 생 지	전남 고흥
	소 속	서울고등법원
	출신학교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b>주 요 경 력</b>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 2003.	군법무관	
○ 20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0.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 20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 2018. 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